대안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中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장 운영방침

제 7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 이 필요한 자
2.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온라인방법
1. 목욕차량 홍보물 부착을 통한 기관 홍보와 등급관련 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2.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센터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3. 지역사회신문이나 전단지 및 광고 판촉물을 활용한다.

오프라인방법
1. 유관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2. 협약기관이나 교육원을 통하여 추천 받는다.
3. 지역사회행사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4. 기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주변에 서비스가 필요한 지인을 추천 받는다.

제 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표준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인정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의 의사표시 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센터와 이용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방문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통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비급여 항목**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배회 나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바.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이용료 등 수납

1.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 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센터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 서비스 시간

일반적으로는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사이로 한다.(필요시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유연하게 시간을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사 업 내 용
방문요양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일상생활 지원 및 환경관리: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3.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센터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감경기준에 따라 각각 9%, 6%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 40% 감경대상자	1.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본인부담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1.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3.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제 11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

배상책임

1.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수급자를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면책범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센터는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 하도록 조치한다.
2.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